

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의안번호 제280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07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4. 07. 1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07. 24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 반영 및 2024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제출하여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 금 명: 고향사랑기금

나. 설치목적: 고향사랑기부자의 선의 존중, 주민 복리 증진 등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목적 구현, 고향사랑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

다. 설치년도: 2023년도

라. 2024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558,801	477,665	81,136	합 계	558,801	477,665	81,136
예치금수회	352,486	271,350	81,136	기금사업	109,100	0	109,100
이수자입	6,315	6,315	0	예치금	449,701	477,665	△27,964
기수타입	200,000	200,000	0				

4. 관련 근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6. 토 론: 없음.

7. 심사결과: 2024. 07. 24. 원안가결